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2일

나. 발 의 자 : 김민성, 김영태, 박세채, 이상호, 이정희, 장세구,
추은희, 허민근 의원(8명)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3월 13일

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민 성 의원

나. 제안이유

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,
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허가기준 개정[별표27]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3. 3. ~ 3. 8.)결과 의견서 1건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

-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중 축사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- 타 시·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축사 등 농가에 부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개정본문에는 별표 27의 기호(■)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별표 27의 기호(■) 제3호 '가'목에 '우사를 제외한다'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자구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